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73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등	2
2.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3.
3. 회 부 일 : 2025. 4.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보존 및 열람 제공 등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의 거래기록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대한 기록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3조1항, 제33조제2항 신설, 제53조제2항제10호 및 제3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33조(거래기록 등의 보존 및 열람) ① -----재화등----- -----체결내용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이하 “거래기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 동안 언제든지 소비자가 해당 거래기록등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등의 대상·범위 및 보존·열람의 방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u>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9. (생략)	② ----- ----- -----.
10. 제33조에 따른 <u>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u>	1. ~ 9. (현행과 같음)
<u>·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u>	10. ----- <u>보존 및 열람</u>
<u>체결내용을</u> 거짓으로 작성한 자	<u>대상에 해당하는 거래기록등</u>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9의2. (생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설>	(생략)
<신설>	(생략)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33조에 따른 <u>재화등의 거래기록</u>	11. ----- <u>거래기록등을</u>
<u>·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u>	<u>보존하지 아니하거나</u> ----- -----
<u>등의 체결내용을</u> 소비자가 열람	--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¹⁾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재화등의 거래기록 및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열람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제된 계약에 대한 자료 부존재로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는지²⁾ 등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할부계약의 해제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언제든지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①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④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에 관한 기록 등의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료 확인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해약환급금액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자의 서류 보존의무에 대해서 거짓 이행 및 의무 불이행에 따라 3천만원 또는 1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 현행법³⁾상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체결내용의 열람의무와 관련하여서도 거짓 이행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이행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제재 수준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해약환급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자료 미보존시 법 준수 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들의 해약환급금 지급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관련 서류 보존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명시되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되므로 수용하는 의견임.

2.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 또는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제9의3호 및 제9의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① (생략)	제5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생략)	10.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 9의2. (생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9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u>
<u><신설></u>	<u>9의4. 제31조제3항에 따른 징계·해임 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생략)	11. (생략)

현행	개정안
12. ~ 14. (생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⁴⁾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 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⁵⁾.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구성하되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그러나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에 대한 각종 감독·관리 권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 시정요구 등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 22건을 시정요구 등을 하였으나 3건을 미이행 하였고, 2024년도에 15건을 시정요구 등을 하였으나 1건을 미이행 하였음.

<공제조합 시정요구 등 이행 현황>

(단위: 건)

통보일	시정	개선	주의통보 등	합계		
					이행	미이행
2019. 1. 11.	9	0	1	10	10	0
2019. 4. 22.	15	0	0	15	15	0
2023. 2. 10.	1	9	12	22	19	3
2024. 3. 28.	0	11	4	15*	14	1

* 2023. 2. 지적사항(3건)의 이행 재요구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공제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앙행정기관 장은 시정명령 등을 불이행한 공제조합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한도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공제조합 과태료 부과 관련 입법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6조(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67조(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 3의6. (생략)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u>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공제조합의 재무상태가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 8. (생략)

④ ~ ⑤ (생략)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진흥법」

제77조(지도·감독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 10. (생략)

③ ~ ④ (생략)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 ④ (생략)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조합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이나,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수준⁶⁾,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고려할 때 공제조합의 시정명령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한도(1천만원)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5

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정보 허위신고 등(과태료 5천만원), 등록정보 미신고 등(3천만원),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시 등(1천만원)